

전자제품 수출추천 요령 공고 안내

전자제품 수출추천 요령 공고 안내

한국전자공업진흥회공고 제112호

수출입공고 제8조 (추전요령의 공고 등)에 의하
여 전자제품 수출추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
다.

1992년 1월 1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1. 추전대상품목 및 추전기준

H S	추천 대상 품목	추천 대상 지역
8516 50	마이크로웨이브오븐	EC, 일본, 홍콩, 싱가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지역
8519 21 29 39 99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 (CDP)	EC
8521 10 90	녹화재생기(VTR)	미국, EC
8523 13 19 21 29 31 32 39 90	비디오녹화용테이프	EC
8528 10	칼라텔레비전수상기	EC
8540 11	텔레비전전용음극선판 (천연색)	EC

○ 비고 EC : 프랑스, 그리스, 벨지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페인, 아일란
드, 포루트갈, 덴마크, 독일, 이태리

2. 추천기준

본회에서 정하는 별도요령에 의한다. 다만 수출
동향 감시품목은 제한없이 추천한다.

3. 처리기한 : 1일내

4. 구비서류

가. 서울소재업체 : 한국전자공업진흥회(서울 강
남구 역삼동 648)

나. 지방소재업체

한국무역협회 지부

- 부산지부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37-7)
- 광주지부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1-11)
- 전주지부 (전북 전주시 경원동 1가 104-32)
- 대전지부 (대전시 중구 은행동 48-1)
- 대구지부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07)
- 청주지부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동 109-2)
- 경남지부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97-6)
-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주안6동 953-4)
- 강원지부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179-7)

- 부 칙 -

1. 이 요령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요령 이전의 공고는 폐지한다.

연말 체불임금 청산 협조 안내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하여 연중 대처해 오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대외무역 환경악화 등 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신발·전자·섬유·봉제 등 노동집약산업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수출부진 등 자금부담 가중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체불임금 발생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발생된 체불임금도 청산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의 생계위협과 함께 집단행동이 우려되고 있어 연말체불임금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니 회원사 여러분의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체불임금 청산대책〉

공지사항

1. 목 적

연말시와 설날을 앞두고 체불임금의 일소와 근로자 귀향 편의제공 등으로 노사 모두가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연말년시와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 하는 데 있음.

2. 시행기간

'91. 12. 16. -'92. 2. 29.

3. 주요추진사항

○ 체불임금 청산 대책

- 연말년시 체불임금 청산 적극지도
- 상습체불업주 강력사법 조치
- 체불청산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 주요공단 및 경제단체의 하도급대금 및 물품납품 대금 등의 신속지급 지도

○ 근로자 귀향 편의제공 및 위로행사

- 귀향근로자 교통편의 제공
- 미귀향 및 산재환자 등 불우근로자 위문
- 임금, 상여금 등 조기지급 권장

4. 체불임금 현황

○ '92. 12. 9 현재 81개업체 144억 2,500만원, 건설 업이 19억 5,600만원으로 전체의 92.5% 차지 -제조업중 신발 65억 7,100만원 (45.6%), 전자 부품 21억 8,800백만원(15.2%), 섬유봉제 24 억 6,400만원(17.6%)

○ 1억이상 고액 체불업체 51개소의 체불임금이 전체의 82.3%에 해당하는 146억 5,400만원으로서 연말체불임금 청산의 최대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음

5. 체불발생 전망

○ 노동집약산업과 중소기업체의 경영 및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연말연시를 전후하여 체불임금 발생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 -신발, 섬유, 전자업체의 체불임금이 112억 2,3 00만원으로 전체의 63.4%차지 -100인 미만 업체의 국제무역적자 누적과 내수 경제 위축 등으로 인한 폐업 사업장 증가 우려 -현존 체불업체 98개소 중 100미만업체수는 53 개소 (37억 100만원)로 전체의 20.9%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중 폐업된 업체는 42개소임
-석유화학제품의 원가승상으로 인한 수출체산 성 악화로 관련산업의 체불발생 요인내재

○ 기타 연말연시의 자금수요 증가에 따른 일시적 자금으로 영세 하청업체, 건설공사 현장의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동절기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체불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이 우려됨

6. 체불임금청산을 위한 금융지원대책

○ 자체분규 귀책 사유없이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자금압박을 받고 임금체불 및 부도우려 기업에 대한 긴급운영자금지원

○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을 감안하여 무역금융 융자기간 연장

7. 설날 근로자 귀향편의제공 및 위로행사

가. 사업주 시행사항

○ 근로자 귀향 편의제공

- 귀향차량제공 및 교통비 지급
- 임금, 및 상여금 조기지급
- 임금, 상여금의 전기 지급일 도래전이라도 근로자 귀향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지급

○ 미귀향 근로자 위로행사

- 기술사 거주자 : 특별급식과 연극, 영화관람 제공 등

○ 임대아파트 거주자 : 사업체별 또는 합동 위로 행사와 선물 등 전달

○ 설날 연휴 근로자 : 특별급식 및 회사대표 현장 방문위로

○ 산재입원환자 위문 및 소년가장 근로자 돋기 -업체별로 위문방문 또는 선물증정

개산환급표 고시신청 안내

1. 제도의 개요

당해업체의 품목별 전년도 평균임금실적의 85% 범위내에서 개산환급표 작성시

(업체신청 → 관세청장 작성고시)

선(기) 적된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개시환급율표에 계기된 관세율 환급금을 예산액으로 미리 지급

공지사항

하고 사후에 정산

※ 정산기간 : 3월(정산신청서류 중 기납증이 한장
이라도 첨부되면 6월 이내)

개산환급용표 고시업체의 고시환급율표 적용 이후는 환급신청 건별로 수출업체에서 임의 선택하는 것으로 자금신청이 어려운 업체는 크게 도움이 될 것임

2. 개산환급율표 고시신청서 접수

- 신청대상 : 91년도 수출품목별(HS 10단위) 개별환급실적이 있는 모든 업체
- 접수기간 : '92. 1. 3-1. 31까지
- 접수처 : 관세청 민원실(135-702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번지)

3. 구비서류

- 개산환급율표 고시신청서 갑, 을, 병 각 1부.
- 각 신청 수출용품(HS 10단위) 별 대표적인 수출 면장 사본 각 1매

4. 기타 참고사항

적용예정 : '92. 4. 1 이후 개산환급신청분 부터 적용

5. 문의처 : 관세청 민원실 Tel (02) 512-3100 환급과 Tel (02) 512-2303

정보산업 표준원 (IIS)

개인회원 모집 안내

정보산업표준원에서는 특별회원, 개인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산업분야의 표준화 활동에 선진표준화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드리는 등 표준원 회원안내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회원 : 표준원의 목적에 찬동하는 업체, 기관, 연구소 등
- 상계회원 : 정보산업분야의 협회 및 자료교환 회원
- 개인회원 : 학회들로서 서로 정보산업분야의 연구기관이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이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

한자.

- 문의처 : 정보산업표준원 (523-2837)

인도의 외국인 투자 안내

1. 개요

인도의 새 내각은 몇가지 대담한 경제정책주도를 단행했다. 산업이 자유화 되었으며 정부의 통제가 최소화 되었고 주요 무역정책 개혁안이 도입되었다. 새 개혁안은 외국인 투자 및 기술 제휴의 경우에 있어, 인도의 기업들이,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게한다.

2. 인도 산업의 탈 규제화

민간 산업분야의 역할 증대

최근까지 공공부문이 인도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왔다. 새 경제 개혁하에서는 민간 부문이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전에 공공부문으로 보호되었던 대부분의 산업이 민간 산업은 중공업, 통신, 발전소, 유통업, 항공산업 등과 같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 허가제 폐지

안보 및 공익과 관련된 몇몇 산업만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에서의 허가제가 폐지되었다. 어느 산업이든지 시장수요에 따라 확장이 가능하고 제조업체는 제품의 품목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생산할 수 있다. 이들 규정은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회사에 적용된다. 기업들의 사업 범위에 대한 제한은 더이상 없게 된다.

3. 외국인 투자와 기술이전

총 칙

과거에 외국인 투자와 기술이전은 똑같이 하나의 규칙을 적용하였다. 종전에 시행되던 케이스별 허가는 무역업무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허가 여부를 불확실하게 했었다. 새 정책은 고도의 기술과 고액의 투자를 우선으로 하는 우선순위산업의 리스트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금속산업, 보일

공지사항

려, 증기 생산 플랜트, 1차 동력기, 전기 기계, 운송장비, 산업기계, 농업기계, 건설장비, 산업기기, 과학 및 전자의료기기, 질소황 비료, 화학제품, 증식기, 고무기계, 인쇄기, 용접봉, 산업용 다이아몬드, 깃묵, 빌딩가공 건축재, 두유제품, 식품 가공산업, 호텔, 관광관련산업 등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는 주한 인도대사관 상무관실에 문의 바람.

기술 이전

새 정책은 기술이전협의서가 위의 총칙에서 언급된 우선순위 산업과 관련된 것이면 자동승인 허락한다. 또한 지불방법 등에 대한 원칙도 마련되었는데, 이는 현재 기술비용에 대해 일시불 1천 원 루피(미화 약 4000,000달러와 함께 국내판매의 5%, 수출액의 8%까지 로얄티 지불을 허락하고 있다. 이 자동허가제가 가능하면 타산업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들 한계를 넘을 경우는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그에 따른 승인절차는 신속히 진행된다.

기술이전 협의하에 외국인 기술자를 필요로 하지만 그에 따른 승인절차는 케이스별로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했으나 이제부터는 허가가 필요없게 되었다.

4.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전에 외국인 투자는 기술이전을 동반해야 했다. 기술이전은 지금도 환영받고 있으나 기술이전 동반이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 아니다.

자동승인

총칙에서 언급한 우선순위 산업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51%의 자본이 자동승인 된다. 이 제도는 외국인 지분을 통하여 자본재 장비 수입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회사들에게 적용가능하다. 이 또한 종전에는 외국인 투자를 각 건별로 승인을 요구하며 일반적으로 40%까지만 외국인 지분을 허락하던 정책과는 크게 다르다.

대기업에 의한 투자

다국적 대기업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경우는

수상실 산하의 외국인 투자 증진국에 의해 처리된다. 사실이 외국인 투자 증진국은 대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환영하며,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의 투자제안은 직접 협상되고 전체적으로 고려되며 일반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서비스 분야에의 투자

이제까지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호텔을 제외한 전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의 지분을 억제해 왔다. 51%의 지분은 호텔 이외에도 관광산업 분야에서 환영받게 된다. 다국적회사는 51%까지의 투자가 현재 가능하다.

100% 수출회사에의 투자

100% 수출회사(EOU)에 외국인의 투자할 경우 100%까지 지분이 허락된다. 국내가격에 따라 EOU회사는 국내판세 지역에서 생산량의 25%까지 판매가 허락된다.

이 경우 추가세금은 판세의 50%만이 부과된다. 새 경제개혁안은 자유 추가무역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여러가지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투자

앞에서 언급한 우선순위산업과 관련이 없거나 51% 이상의 외국인 지분을 필요로 하는 투자 역시 환영받고 있으며 허가 또한 신속히 처리된다.

승인절차 : 단일창구

자동승인 품목으로 분류된 신청서는 중앙은행에 제출하고 중앙은행은 이를 승인해주며 자본재 수입 허가서를 14일 이내에 발급한다.

대규모 다국적 회사들의 투자는 특별권한이 주어진 외국인 투자증진국에 의해 모든것이 처리되고, 협상이 가능하며 6주내에 허가가 난다.

기타 외국인 투자 신청은 산업개발부 소속 산업승인 담당직원에 의해 처리되고 신속하게 허가처리된다.

세제혜택

이익금중 30%는 소득세로 부터 10년 동안 면제된다.

100% 수출회사는 세금이 완전면제되고 수출로 부터 얻은 이익금에 대한 세금 또한 면제된다.

4.8.2 한국과 인도는 관세율인하, 15%의 배당금,

*** 공지사항 ***

15%의 이자와 15%로 알터 지불금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맺고 있다.

배당금

일정기간 동안 수출로 번돈은 자유로이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 수출이익의 균형을 도모해야 할 필요는 일시적이며, 어떤 경우이던 처음 7년동안이다.

5. 무역정책의 개선

수출에 대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여러 개혁조치가 수행되었다. 원자재 및 기계는 수출상품 제조경쟁의 기본요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입통제가 대폭 제거되었으며 EXPORT SCRIIPT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이미 수출을 이행한 수출업자에게 발행되고 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며 이것으로 어떤 원자재나, 부속품 또는 자본재를 수입할 수 있다. 이는 인도의 화폐를 3년 후에 완전히 경화로 만드는 첫번째 작업이다.

6. 인도투자에 관한 유리한 요소들

- 풍부한 원자재
 - 영어를 구사하는 숙련공의 무진장한 보고 미국과 소련 다음가는 세계 세번째로 과학자의 기술인력을 소유
 - 도로, 철도, 운송 시스템, 전력, 통신망, 우편제도, 공항과 항구 등의 편리한 산업시설
 - 전세계에 걸친 산업은행의 거대한 망과 함께 약동적인 자본시장 및 건실한 금융제도
 - 활동적인 젊은 기업인들
 - 8억 4천 3백만 인구의 거대한 시장. 이들중 2억 5천만이 중산층 및 부유층에 해당하며 따라서 모든 형태의 소비자 제품 및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 * 기타 더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주한 인도대사관, 상무관설(전화 798-4257, 4268, 096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